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730
------	------

2025. 6. 27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6일, 이종환 의원 외 21명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6.19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종환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고,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희롱·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 조항을 규정으로써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하거나 성희롱·폭언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(안 제5조 제4호 및 같은 조제6호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자가 삭제 조치할 수 있는 부적절한 게시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특정인을 비방하거나</u>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. (생략) 6. <u>욕설</u> ·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. ~ 9. (생략)	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</u> ----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성희롱·폭언·욕설</u> 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

(2)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현황

-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유게시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, 이는 공식적인 민원, 문의, 신고 등과 구분되는 자율적인 의견 개진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음.

○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, 자유게시판에는 2년간 총 8,564건의 게시글이 등록되었고, 따라서 일평균 11.7개의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음.

- 다만, 이 중 3,536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므로 5,028건(일 평균 6.9개)만이 정상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음.

○ 정상 등록된 5,028건의 게시물 중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블라인드(관리자 삭제) 처리가 된 게시물은 2,240건(44.6%)으로 대부분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되었음.

< 자유게시판 블라인드 처리 현황 >

(단위: 건)

합계	상업성광고 저작권침해	국가안전 및 보안 위협	정치적 목적	반복적인 게시물	특정인 비방이나 명예훼손	불건전 게시물
2,240	1,839	1	2	370	22	6

○ 이처럼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조례상 부적절하다 판단되는 게시물이 등록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.

(3)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

○ 동 개정안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, 비하, 모욕성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(제5조제4호), 성희롱, 폭언 게시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(제5조제6호) 제안하고 있음.

- 해당 내용은 기존 조례의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,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는 조치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입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중 현저히 높은 비율이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고, 정상 게시된 게시물의 대다수가 민원성 의견임을 고려할 때, 자유게시판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춘선, 오금란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고,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
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희롱·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 조항을 규정으로써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하거나 성희롱·폭언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(안 제5조제4호 및 같은 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특정인을 비방하거나”를 “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제6호 중 “욕설”을 “성희롱·폭언·욕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생 략)	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</u> 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	4. <u>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 명예훼손</u> 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<u>욕설</u> ·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	6. <u>성희롱·폭언·욕설</u> ·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삭제가 가능한 게시물에 대해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규정에 의한 게시물 관리 추가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